

경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6223 판결 참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로 확정).

다섯째, 이번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동조건인 각 사업장에서 임금, 수당,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목적을 명백히 지니고 있다(법 제2조 제5호). 또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명백히 이번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각 사업장에서 적용받게 될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바,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는 이번 파업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명백히 인정된다.

여섯째, 이번 파업의 전격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파업 목적의 정당성, 공공성, 중대성,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높은 수준의 관심 및 노동조건에 대한 밀접한 영향력, 각 단위사업장에서의 교섭 과정 및 사전 공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파업 전부터 이에 대해 입장을 내고 대비를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번 파업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보장되며, 법 위반 사항이 없다.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노동조건의 개악을 막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공공부문 서비스의 이용자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탄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부당하다. 공공부문 사용자들을 포함한 경총과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공공성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23. 9. 1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